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중국 발전소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관련 용역..... 2
 한국 장비제조업체의 장비 수출 계약 자문..... 2
 중국 일대일로 국책사업 관련 투자 자문..... 3
 한국법인의 중국R&D 자회사의 용역수행계약 관련 자문..... 3
 한국종합상사의 보증계약 작성 관련 자문..... 4
 한국법인의 청도 자회사 장비매매계약분쟁 소송..... 4
 [베트남]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 5
 [라오스]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사모사채 발행 자문..... 6

■ 해외 업무논단 ■

[중국] 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시대 진입..... 7
 [베트남] 공단 입주기업의 부동산 담보 설정 문제..... 9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중앙은행 : 우수 외국기업 중국 경내 시장에서 주식 발행 가능..... 12
 세무총국, 「수출세금환급기업분류관리방법」 개정..... 12
 「국내신용장심사규칙」 발표..... 12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지방채권 발행 예정..... 13
 [일본] 일본 정부 경제대책 발표..... 14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중국 발전소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관련 용역

지평은 중국 발전소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장비제조업체의 장비 수출 계약 자문

지평은 한국 장비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장비 수출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중국 일대일로 국책사업 관련 투자 자문

지평은 중국 일대일로 국책사업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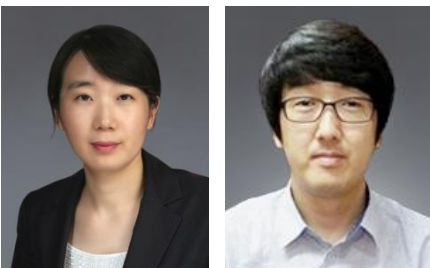


채희석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법인의 중국R&D 자회사의 용역수행계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R&D 자회사의 용역수행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한국종합상사의 보증계약 작성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종합상사를 대리하여 보증계약 작성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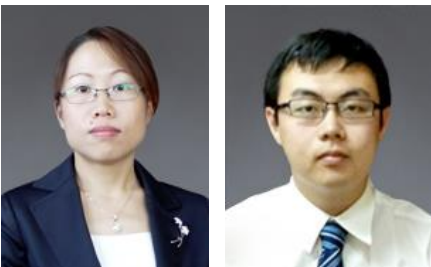


김옥림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한국법인의 청도 자회사 장비매매계약분쟁 소송

지평은 한국법인의 청도 자회사를 대리하여 장비매매계약분쟁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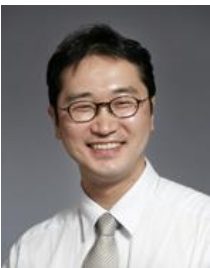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

지평은 부산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부산은행, 지방은행 첫 베트남 호찌민 진출\(2016. 8. 16.\)](#)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사모사채 발행 자문

지평은 KB국민카드를 대리하여 코라오그룹 인도차이나뱅크의 5,000만 달러 사모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코라오홀딩스 인도차이나뱅크, KB국민카드와 5천만 달러 채권 발행\(2016. 9. 1.\)](#)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해외 업무논단 - 중국 ■

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시대 진입

(법무법인 지평 [채광호](#) 외국변호사)

중국의 입법기관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제22차 회의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자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위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외국인 및 대만 동포의 투자에 대하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상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영역 등을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영역은 중국 내국인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행되던 인허가제도는 네거티브리스트 상의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은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같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인 9월 3일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신고 관리 잠행방법(의견 수렴안)」을 발표하여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으며 위 개정안의 실무 취급을 위한 절차 규정도 대응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인허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절차적인 면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리스트가 제정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만큼 네거티브리스트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2015년 1월에 공표한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채택한 「외국 투자법(의견 수렴안)」도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아직 전국인대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위 4개 법률을 통합한 「외국 투자법」의 입법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 해외 업무논단 - 베트남 ■

공단 입주기업의 부동산 담보 설정 문제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은 토지의 소유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사인(私人)은 정부로부터 한정된 기간동안 사용권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사용권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토지사용권의 이전, 담보 설정 등 권리의 취득과 변동은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민법상의 물권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자인 공단 개발사와의 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공단 입주기업이 토지사용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데에는 법리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공단 입주기업의 저당권 설정 가능성

2013년 11월 29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현행 베트남 토지법에 따르면, 공단개발사가 입주기업에게 토지를 전대차하고 전차료를 지급받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 공단개발사가 정부에 임대료를 연납(yearly payment)하고 임차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에게도 연납 방식으로만 전대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단개발사가 정부에 임대료를 일시납(lump sum payment)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에게 전대할 때에 전차료의 (i) 일시납 또는 (ii) 연납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입주기업이 전차료를 일시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전차료를 연납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법 발효 후에 입주기업이 공단 토지를 전대차한 경우, 입주기업이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입주기업이 공단개발사에게 전차료를 일시납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는 또한 공단개발사가 정부에게 임대료를 일시납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단개발사가 정부에 임대료를 연납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에게도 연납 방식으로만 전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입주기업은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개정 전 토지법의 규정 흠결

개정 전 토지법은 공단개발사의 정부에 대한 임대료 납부 방식과 입주기업의 공단개발사에 대한 전차료 납부 방식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개발사는 정부에 연납을 하면서도 입주기업으로부터 일시납을 받은 사례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단개발사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일시납받은 대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정부와 입주기업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토지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개발사가 정부에 자신의 임대료를 일시납한 경우에만 입주기업으로부터 전차료를 일시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기존 공단개발사 임대료 납부 확인 필요성

현행 토지법 발효 전에 임대료를 연납하던 공단개발사가 입주기업으로부터 전차료를 일시납받은 경우에는 현행 토지법 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 토지법은 공단개발사가 입주기업으로부터 일시납받은 전차료 상당액을 국가에 자신의 임대료로 납부하면 입주기업이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개발사가 자신의 임대료 100만 달러를 매년 2만 달러씩 연납하면서, 어떤 입주기업으로부터 전차료 10만 달러를 일시납받은 경우, 공단개발사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차료 10만 달러를 국가에 납부하면 해당 입주기업은 자신의 토지사용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법 발효 전에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토지사용권에 담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개발사가 해당 입주기업이 일시납한 전차료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부연하면 공단개발사가 자신의 임대료 전부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건물만 저당권 설정한 경우의 위험

현행 토지법하에서 공단개발사와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전차료를 연납할 경우 입주기업은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건물을 처분할 경우 취득자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잔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단개발사가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토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개발사가 국가에게 잔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많은 민원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실제로 공단개발사 또는 정부가 토지의 원상회복을 청구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건물 취득자가 공단개발사와의 토지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취지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베트남 법체계상으로는 건물 취득자가 토지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개발사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지상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앙은행 : 우수 외국기업 중국 경내 시장에서 주식 발행 가능

중국인민은행에서 6월 21일 발표한 2015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의 대외개방도를 크게 확대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외국기업도 중국 경내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중국 주식예탁증권(CDR)의 발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방 정책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도 이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개혁으로 평가하는 반면,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상장이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총국, 「수출세금환급기업분류관리방법」 개정

국가 세무총국은 2016년 7월 26일에 새로이 개정된 「수출세금환급기업분류관리방법」(이하 “분류방법”)을 발표하였는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분류방법은 세금환급기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기업에 대하여 차별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을 향상하고 세금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의하면 제1유형의 수출기업에 대하여서는 특별 취급경로(특약 서비스구역)를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세금환급 절차를 취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급 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제1유형 수출기업이 세금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5영업일 내에 세금환급절차를 완료하도록 법정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2유형, 제3유형의 수출기업 세금환급 신청에 관한 심사 및 취급 기간도 기존의 20영업일에서 각각 10영업일, 15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제4유형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세금환급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신용장심사규칙」 발표

8월 18일, 중국지불청산협회와 중국은행업협회는 공동으로 「국내신용장심사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국내신용장결산방법」에서 정한 심사원칙을 근거로 국내 신용장의 유형별 증빙 서류에 대한 심사원칙과 요점을 정하였으며, 상업 영수증, 운송 증빙, 보험 증빙 등 각 증빙 서류별 심사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완전한 업무 취급지침을 완성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의 시행으로 국내 신용장에 대한 통일된 증빙서류 심사기준을 구축하여 국내 신용장 증빙 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의 공백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지방채권 발행 예정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상하이시 재정 개혁과 발전 '13.5' 계획」을 발표하여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혁신 플랫폼을 토대로 자유무역구 내의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중국 내로 경외 인민폐가 유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가 추가되어 인민폐의 국내외 양방향 유통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정부 경제대책 발표

2016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임시각의로 28조 1000억 엔 규모의 경제대책("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경제대책 사업규모는 과거 3번째이며 아베정권하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본 경제대책의 주요항목 및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의 가속(3.5조 엔 정도)

- (1) 육아·개호(介護)의 환경 정비
- (2)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 활약의 추진
- (3) 사회 전체 소득과 소비의 향상

2. 21세기형 인프라 정비(10.7조 엔 정도)

- (1)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향한 인프라 정비
- (2) 농림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 (3) 리니어 중앙신칸센, 정비신칸센 등의 정비 가속
- (4) 인프라 등의 해외전개 지원
-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의 가속

3.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불안정성 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의 지원 (10.9조 엔 정도)

- (1)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자금조달 지원
- (2)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경영력 강화·생산성 향상 지원
- (3) 지방창생(활성화) 추진
- (4) 리스크 대응

4.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 대진재로부터의 부흥, 안전·안심, 방재 대응의 강화(3.0조 엔 정도)

- (1)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 (2) 동일본 대진재로부터의 부흥 가속화
- (3) 재해 대응의 강화·노후화 대책
- (4) 안전·안심의 회복

5. 성장과 분배의 호순화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등의 추진

- (1) 근무 방식 개혁의 추진
- (2) 최저임금
- (3) 금융정책
- (4) 그 밖의 구조개혁의 추진

[출처 : 일본 수상관저]